



법무법인(유한) 동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17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06620]
대표전화 : 02-2046-1300 대표팩스 : 02-3482-1177 홈페이지 : www.donginlaw.co.kr

일 자 : 2024. 7. 31.
수 신 : 주식회사 팝콘버스(대표이사 정훈정)
참 조 :
제 목 : 민팅한 NFT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에서 의뢰하신 표제의 건에 대한 저희 법무법인의 법률검토의견을 다음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질의의 요지

귀사는 망인의 생체원소를 담아 만드는 랩그로운(lab grown) 생체보석과 그 생체보석을 안치하는 추모관안치대를 NFT 민팅((NFT Minting -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여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고 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과정으로 정의됩니다)하여 실물 자산과 연동된 NFT 상품을 발행하고자 하는 법인입니다.

귀사가 판매한 민팅된 NFT는 귀사의 재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정액으로 판매되며, 그 NFT를 보유한 홀더(holder, 소유자의 개념)는 귀사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NFT의 가격은 고정된 가격으로 회사의 평가에 따라 가격이 변동하지 않는 고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으며, 고정된 가치의 가격으로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귀사가 운영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개인간 거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할 경우 귀사가 민팅한 NFT는 고정가격의 전자상품권이어서 증권의 성격으로 볼 수 없기에, 이를 판매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



법무법인(유한) 동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17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06620]
대표전화 : 02-2046-1300 대표팩스 : 02-3482-1177 홈페이지 : www.donginlaw.co.kr

장법' 이라합니다)에서 처벌하는 미등록 증권판매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그러한 해석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2. 답변

다음 자문 의견은 귀사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검토한 것으로 그 자료의 신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결론입니다.

가. 귀사의 사업개요

귀사는 질의한 내용대로 망인의 생체원소를 담아 만드는 랩그로운 생체보석과 그 생체보석을 안치할 수 있는 추모관 안치대를 상품으로 하여, 이를 NFT로 민팅하여 실물자산과 연동된 NFT 상품을 발행하려 합니다. 민팅한 NFT는 귀사의 재화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되며, NFT를 보유한 홀더는 귀사의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나. 위 NFT 상품의 특성

① 고정된 가치- NFT의 가격은 귀사의 평가에 따라 변동하지 않으며 고정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고정된 가격으로 상품과 교환이 가능합니다.

② 자유로운 거래 - 귀사가 운영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며 개인 간 거래도 가능합니다.

③ 계약 상태 - 귀사는 생체원소를 담아 만드는 랩그로운 보석 생산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을 지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생체보석을 안치할 수 있는 추모관의 건립 및 분양 권한을 득하여 안치대를 확보한 상태로 보입니다.

다. 법률적 검토



법무법인(유한) 동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17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06620]
대표전화 : 02-2046-1300 대표팩스 : 02-3482-1177 홈페이지 : www.donginlaw.co.kr

일반적으로 증권은 투자자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며 투자하는 금융상품을 의미합니다. 귀사가 정액으로 분양하는 NFT가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을 검토해보면, 일단 증권으로 분류되려면 투자자가 자산의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구매해야 합니다. 귀사의 NFT는 고정된 가치로 특정 상품을 교환할 수 있는 형태로, 투자 목적보다는 상품 교환을 위한 수단입니다. 그리고 귀사의 NFT의 가치는 분양 당시의 정액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그 가치가 당사자 간의 개인적 거래 외에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지는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NFT는 자산의 가치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금융상품의 성격을 띠지는 않으며 투자 수익을 기대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자본시장법 상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3. 결어

위와 같은 법률자문의견을 드리오니 귀사에서는 이에 관한 추가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동인

대표변호사 황 윤 구

담당변호사 김 세 화





법무법인(유한) 동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74길 4, 17층(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 [06620]

대표전화 : 02-2046-1300 대표팩스 : 02-3482-1177 홈페이지 : www.donginlaw.co.kr

본 의견서는 귀사에서 제공한 자료 등에 나타나 있는 사안과 쟁점에 국한하여 의뢰인의 업무처리와 판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본 의견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귀사의 질의내용에 기재된 사항에 한정되며, 추후 위 사안이 법원의 재판대상이 되는 경우 저희의 의견과 달리 판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의견서는 위와 다른 용도로 또는 의뢰인 이외의 분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의뢰인께서 제3자에게 이 의견서 또는 사본을 제공하고자 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저희 법인의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서는 담당변호사의 직인이 날인되어야 유효한 의견서로서의 효력을 발휘하며, 만약 본 의견서를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릴 경우에는 이른 시일 내에 의견서 원본을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